

유럽 규제 대응

BAE, KIM & LEE LLC



유럽 규제 대응

미국과 중국 간의 점증하는 긴장관계, 우크라이나, 가자, 대만해협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인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발달 등은 글로벌한 성장과 도약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과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정부에게 막대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세계적 규제 기준을 선점하며, 불안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산업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반도체나 배터리 또는 핵심원자재 산업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역외보조금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강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갖추어야 하는 사실상의 표준(소위 '브뤼셀 효과')이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유럽에 수출, 투자 및 관련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과 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추고, 공정거래, ESG, 인공지능, 통상 및 규제 등 모든 관련 분야에서 국내 어느 로펌보다 우수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BKL은 유럽 규제에 관한 소식을 적시에 전하고 한 발 빨리 분석하는 등 우리 기업의 유럽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really enjoyed working with the team. They had a good grip on what the regulators wanted and how we should shape our position."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I am very satisfied with their work. The firm's strength is definitely their ties with the regulators."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The team has a good reputation and relationship with the industry experts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which makes a big difference."

- The Legal 500 Asia Pacific

"Bae, Kim & Lee has a variety of experts and manpower in each field, and their understanding of related laws is very high."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RECENT HIGHLIGHTS (2024. 7. 10.자 기준)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EU 역외보조금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s; FSR)

- 2021. 5. EU 집행위 제안, 2023. 1. 법안 발효, 2023. 7.(직권조사) 및 2023. 10.(사전신고) 시행
- EU 역내시장 경쟁 왜곡 방지를 위해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 받은 기업이 EU 내에서 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규제(우리 기업이 한국 아닌 제3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포함)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사전신고 → 경쟁 왜곡 등 인정되면 시정조치 부과
-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조금으로 인해 경쟁 왜곡이 의심되면 직권조사 → 시정조치 부과
- EU 집행위, 2024. 2. 16. 중국 기업 중처쓰팡에 대한 직권 조사 개시(역외보조금 규정 첫 적용 사례)
- EU 집행위, 2024. 3. 1. 예상보다 많은 사전신고로 인한 업무 처리 위해 3개 부서로 구성된 'Directorate K' 신설 →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향후 FSR 집행 사례 증가 가능성
- EU 집행위, 2024. 4. 3.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단지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중국 기업이 관여된 2건에 대한 조사 결정 (루마니아 ENEVO 그룹-중국 LONGi 컨소시엄, 중국 발전사 Shanghai Electric)
 - ENEVO그룹과 Shanghai Electric은 2024. 5. 13. 공공조달 참여 계획 철회
- EU 집행위, 2024. 4. 23. 중국 기업 Nuctech의 폴란드 및 네덜란드 사무소 대상 최초의 현장조사 실시

EU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 2020. 12. 집행위 제안, 2022. 11. 발효, 2023. 5. 시행, 2024. 3. 모든 규정 적용
- 일정 요건 충족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지정, 개인정보 보호 포함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의무 위반의 경우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 벌금 등 부과 가능
 - 현재까지 Alphabet, Apple, ByteDance, Meta, Microsoft, Booking.com 등이 게이트키퍼로 지정
- EU 집행위, 2024. 6. 26.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DMA 규정위반이라는 예비조사 결과 통보(최초 DMA 위반 통보 사례, 관련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 부과 가능)

EU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 Act)

- 2020. 12. 집행위 제안, 2022. 10. 최종 채택, 2023. 8. 시행(대규모 플랫폼), 2024. 2. 모든 플랫폼에 적용
-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등에게 불법적 혐오표현, 성적 콘텐츠 방지 등 다양한 행위 의무 부과, 의무 위반 시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 벌금 등 부과 가능
- EU 집행위, 2024. 5. 16. Facebook과 Instagram의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하여 Meta에 대한 조사절차 개시

영국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Bill)

- 2022. 5. 입법안 소개, 2024. 5. 23. 영국 의회 통과, 2024. 하반기 발효 예상
- 디지털시장 독과점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과점법과 소비자법을 하나의 법안에 포함
- 허위 리뷰, 구독 함정 등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
- 시장지배력 있는 기업을 지정하고 일정한 행동기준 부과, 위반시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부과 가능

환경, 기후 위기 및 ESG

EU 탄소국경조정제도 (EU CBAM)

- 2021. 7. 집행위 제안, 2023. 5. 발효, 2023. 10. 전환기간 개시, 2026. 1. 전체 시행
- 전환기간(2023. 10. ~ 2025. 12.) 중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부담, 2026. 1. 전체 시행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향후 대상 품목 확대 가능)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신고의무 부담,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 대상 품목의 탄소배출량이 일정기준 초과하면 CBAM 인증서 구매해야 EU로 수출(통관) 가능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UK CBAM)

- 2023. 12. 영국 정부는 2027년부터 CBAM 시행하겠다고 발표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유리 등 탄소집약적 제품에 적용 예상, 2024년 구체적인 적용대상 확정 예정

탄소중립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 2023. 3. 집행위 제안, 2024. 2. 이사회-의회 잠정 합의, 2024. 4. 25. 유럽의회 승인, 2024. 5. 27. 유럽이사회 채택
- 배터리, 태양광 등 탄소중립기술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EU 역내 수요의 40%까지 확대, 세계 시장 점유율 15% 달성
- 행정절차 간소화, 탄소중립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탄소중립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공조달 시 탄소중립 고려, 규제 샌드박스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EU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

- 2022. 11. 집행위 제안, 2024. 1. 이사회-의회 잠정 합의, 2024. 4. 유럽의회 승인
- 탄소제거시장 발전과 기술 개발을 위해, 탄소제거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부여
- 인증 받은 탄소제거활동에는 탄소제거 인증마크 부여
- 인증체계는 'QU.A.L.ITY'로 정량화(Quantification), 부가성(Additionality), 장기저장(Long-term storag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EU 배터리법

- 2020. 12. 집행위 제안, 2023. 8. 발효, 2024. 2. 18. 시행(전기차,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에 적용)
- 지속가능성 및 안전 요건, 라벨링 및 정보 요건을 충족한 배터리만 EU 내 판매 가능
- 탄소발자국 선언, 라벨링, 기술문서(전기차, 충전식 산업용 및 LMT 배터리, 2025. 2. 순차 시행)
- 유해물질 사용 규제, 재활용 의무, 공급망 실사, 배터리여권, 폐배터리 수집·처리·재활용 등 폐배터리 관리
- EU 집행위, 2024. 4. 30.부터 5. 28.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계산과 검증 방법에 관한 위임입법 초안'과 '탄소발자국 신고서 양식에 관한 이행입법 초안'에 관한 의견 수렴 진행
- 독일, 2024. 5. 8. EU 회원국 중 최초로 국내 이행입법을 위한 '배터리 규제에 관한 초안'(BattDG) 발표

EU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차량 배출기준 강화: EURO 7 Standard)

- 2022. 11. 집행위 제안, 2023. 12. 이사회-의회 잠정 합의, 2024. 2. 의회 통과, 2024. 4. 12. 이사회 최종 승인
- EU 자동차 CO2 배출규제 기한인 2035년 이전 운영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2035년 이후 친환경 차량에 대한 타이어·브레이크·배터리 수명요건 등 제시
- 배출 허용기준 강화, 암모니아, 아산화질소, 메테인 등 규제대상 추가, 비(非)배기 오염물질 포함, 브레이크 및 타이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규제, 배터리 수명기준 등

메탄배출감축규정 (Methane Emissions Reduction in the Energy Sector)

- 2022. 4. 집행위 제안, 2023. 11. 의회-이사회 잠정합의, 2024. 3. 의회 통과, 2024. 4. 이사회 채택 및 발효
-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메탄배출 30% 감축을 목표로 한 '글로벌 메탄서약(COP28 서명)'의 이행
- 에너지 부문의 메탄배출 및 누출에 대한 석유, 가스, 석탄 사업자의 의무 강화
- 대상자는 관련 국가 당국에 메탄 누출 감지 및 수리 계획을 제출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누출 감지 및 수리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누출이 감지된 직후 또는 5일 이내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함

EU 삼림벌채규정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 2021. 11. 집행위 제안, 2022. 12. 의회-이사회 잠정합의, 2023. 4. 의회 통과, 2023. 6. 발효
- 커피, 코코아, 소고기, 팜유, 고무, 목재, 대두와 그 관련 제품 규제
- EU 역내시장 출시를 위해서는 대상 제품이 삼림 벌채를 통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 필요(2024. 12. 30. 시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5. 6. 30. 시행, 다만 수출기업들의 준비 어려움으로 인한 연기 가능성 대두)
- 기업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삼림 벌채에 관한 실사 의무 및 책임 부담, 환경 및 사회적 기준 충족 필요

EU 배출권거래제 (EU Emission Trading System, EU-ETS)

- 2023.6. EU 배출권거래제법(EU-ETS) 개정으로 해상운송 부문을 규제대상에 포함
- 2024.1. EU 회원국의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온실가스배출량 보고 및 배출권 제출의무 부과
- 선사는 2024년 배출량의 40%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 의무 제출, 2027년까지 100%로 확대 예정
- 한국 선사 등 비EU 선박에 대해서도 EU 회원국 항구 입출항시 의무 부과
- 비EU와 EU 사이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에 대해 탄소배출권 제출 필요

EU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CSRD - 2021.4 집행위 제안, 2022.11. 승인, 2023. 1. 발효.(18개월 내 자국 법률 전환 필요)
- ESRS - 2022. 집행위 제안, 2023.7 채택. 2024.1. 시행(역내 기업 약 5만개 적용), (산업별 표준) 산업 부문별채택 기한을 2026. 6.로 2년 연기, (역외기업용 표준) 역외기업용 공시 표준 채택기한 또한 2026. 6.로 2년 연기되었으나 2028년부터 적용되는 공시 일정은 기존대로 유지
- 비EU 기업 중 EU 역내 매출 4천만 유로 이상 지점/종속기업이 있거나 과거 2년간 매년 EU 역내 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적용(2029. 1. 적용)
- 대상기업은 CSRD에 기반하여 ESRS를 따르고 82개 주제 표준 중 이중 중대성 평가에 입각하여 공시 필요
- CSRD/ESRS를 준용하여 공시한 경우, EU CSDDD(공급망실사지침) 및 그린 택소노미 공시 부분 면제 가능

제품 수리 촉진 공동규칙 지침 (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 2023. 3. 집행위 제안, 2024. 2. 3자 합의
- 제품의 재활용 촉진, 환경 피해 감소,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강화 등을 위해,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최대 10년) 제조사에게 일정한 수리 의무(Repair Obligation) 부과
 -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교체비용보다 수리비용이 높은 경우, 수리 대신 교체 선택 가능
- 세탁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같은 기술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제품이 적용 대상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 2022. 3. 집행위 제안, 2023. 12. 이사회-의회 잠정 합의, 2024. 5. 28. 최종 승인
- 제품의 생애주기 동안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재활용 촉진, 제품의 지속가능성 증진
- 섬유, 가구, 철강 등 규제대상 추가, 생애주기 정보를 포함한 전자적 여권 도입, 강화된 집행절차 도입

EU 그린워싱 지침 (Greenwashing Directive)

- 2023. 3. 집행위 제안, 2023. 9. 잠정 합의, 2024. 1. 의회 통과, 향후 이사회 최종 승인 및 자국법 전환 필요
- 제품에 '환경친화적' '자연적' '기후중립적', '에코' 등 일반적인 친환경 표시(라벨) 금지, 근거 없는 내구성 및사용 횟수 등 잘못된 표시 금지
- 일정 요건 충족하여 공식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지속가능성 표시 가능

EU 그린 클레임 지침 (EU Green Claims Directive)

- 2023. 3. 집행위 제안, 2024. 3. 의회 동의, 향후 이사회 승인 및 자국법 전환 필요
- 제품과 서비스 텍스트/라벨에 친환경성 표기 시 그 근거 및 승인 필요, (예) 탄소중립 주장은 내부 감축 혹은 Offsets 여부 명확히 구분, LCA 관점에서 중요한 환경영향 측면에서 개선 방안 설명
- 연간 매출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및 공공지원 배제 조치 가능성

영국 그린 클레임 코드 (UK Green Claims Code)

- 2021. 9. 영국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발표
- 친환경 제품 주장(Green Claim)에 대한 6가지 행동원칙을 담은 시행지침
-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사실 전달하고, 중요한 정보 공개 필요
-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거나 모호한 표현, 제품의 수명 주기 중 일부분을 이용한 기만 광고를 금지 등

EU ESG 용어 펀드 명칭 가이드라인

- 2022. 11. 유럽증권시장청(ESMA) 초안 발표, 2023. 8. 1. EU 내 모든 펀드에 적용
- ESG 용어를 펀드 명칭에 사용 시 투자 자산 80% 이상 환경 및 사회적 기준 부합 필요
- 지속가능성 관련 용어 사용 시 투자 자산 50% 이상이 지속가능한 투자 기준 부합 필요

기술/개인정보

EU 반도체법 (European Chips Act Regulation)

- 2022. 2. 집행위 제안, 2023. 9. 발효(개별 회원국 시행계획 미완성)
- EU 내 반도체 생태계 조성, 안전한 공급망 확보,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20% 확대
- 최신 반도체 기술 개발과 연구·혁신 지원을 위해 공공 및 민간 투자 430억 유로(약 61.5조 원) 이상 조성
- 인텔, TSMC 등은 EU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기대하고 독일에 공장 건설 계획 발표

EU 인공지능법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2021. 4. 집행위 제안, 2023. 12. 잠정 합의, 2024. 3. 의회 통과, 2024. 5. 이사회 승인
-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 AI 시스템을 금지된 위험, 고위험, 낮은 또는 최소 위험으로 구분
- 금지된 위험: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 등 개인이나 집단에 해로운 일정한 행위 금지
- 고위험: 투명성과 정보제공, 인간에 의한 감독,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품질 기준 충족, 기술문서 작성 등
- EU 집행위, 법을 위반한 기업에 3,500만 유로와 글로벌 연 매출 7% 중 높은 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2018. 5. 발효, 시행(1995년부터 시행된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수정, 보완)
- EU 역내에서 활동 중인 회사 뿐만 아니라 EU 역외에서 EU 주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관에도 적용
-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감독기구에 72시간 내에 통지할 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 등 광범위한 의무 및 책임 부과

공급망

공급망 실사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CS3D)

- 2022. 2. 집행위 제안, 2023. 12. 이사회-의회 잠정 합의, 2024. 3. 이사회 승인, 2024. 4. 의회 통과, EU 회원국은 2026년까지 국내법으로 전환 예정(실사의무는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확대)
- EU 기업의 경우 임직원 1000명 이상, 연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 기업 등에 적용
- 비-EU 기업의 경우, EU 역내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하거나 EU 역내에서 연 2,250만 유로 초과 로열티를 수령하고 EU 역내 순매출 8천만 유로 초과인 경우 적용
- 대상 기업은 공급망 체인에서 환경 오염 및 인권 침해 발생 여부를 실사하고 이를 방지할 의무 부담
- EU 차원 공급망 실사 뿐만 아니라 독일(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프랑스(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등 개별 국가의 유사 규제 존재
- 국내 기업의 경우, CSDDD 대상 기업의 공급망에 속할 경우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권 및 환경 리스크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핵심원자재법 (Critical Raw Materials Act)

- 2023. 2. 집행위 제안, 2023. 11. 잠정 합의, 2023. 12. 의회 채택, 2024. 3. 이사회 승인, 2024. 5. 23. 발효
- 34개 핵심 원자재(17개 전략 원자재 포함) 외부 의존 감소, EU 시장점유율 2030년까지 20% 달성, 공급망 확보
- 전략 원자재 사용하여 배터리 등 각종 물품 제조하는 대기업은 3년마다 공급망에 존재하는 위험성 평가

▶ 유럽연합 입법 절차

EU의 규정(Regulation)*과 지침(Directive)** 등 입법을 위해 우선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제안이 필요하고,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의회(Parliament)와 이사회(Council)의 동의, 협의 및 최종 승인 필요, 관보 게재 후 일정 기간 후 발효

* 규정(Regulation) - 회원국의 국내입법 필요 없이 EU 역내에 구속력 발생

** 지침(Directive) - 회원국의 국내입법절차(국내법 전환) 필요

PROFESSIONALS

통상 및 규제



허경욱 고문
T 02.3404.7504
E kyungwook.hur@bkl.co.kr



임성남 고문
T 02.3404.0576
E sungnam.lim@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T 02.3404.0698
E jeena.kim@bkl.co.kr



권소담 변호사
T 02.3404.7651
E sodam.kweon@bkl.co.kr



한창완 변호사
T 02.3404.1076
E changwan.han@bkl.co.kr

환경, 기후위기 및 ESG



정연만 고문
T 02.3404.7511
E yeonman.jeong@bkl.co.kr



이윤남 변호사
T 02.3404.0687
E younam.lee@bkl.co.kr



김진호 외국변호사
미국 Oregon주
T 02.3404.0282
E jinhyo.kim@bkl.co.kr



곽시명 공인회계사
T 02.3404.0581
E seemyung.kwack@bkl.co.kr



이연우 전문위원
T 02.3404.7351
E yeonwoo.lee@bkl.co.kr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강일 변호사
T 02.3404.0689
E il.kang@bkl.co.kr



김규식 변호사
T 02.3404.0945
E kyusik.kim@bkl.co.kr



최휘진 변호사
T 02.3404.6406
E hwjin.choi@bkl.co.kr

개인정보보호와 인공지능(AI)



강태욱 변호사
T 02.3404.0485
E taek.kang@bkl.co.kr



윤주호 변호사
T 02.3404.6542
E juho.yoon@bkl.co.kr

기업법무, 컴플라이언스 및 아웃바운드



이범주 변호사
T 02.3404.0843
E alan.pj.lee@bkl.co.kr



손지영 외국변호사
미국 New York주
T 02.3404.0241
E jiyong.sohn@bkl.co.kr



서원민 외국변호사
독일
T 02.3404.0246
E michael.suh@bkl.co.kr